

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 정: 2011.02.21.(이사회 승인)

최근개정: 2022.08.25.(이사회 승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42조에 의거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 분과 선택) 학회의 회원은 회원 가입 시 활동을 희망하는 소속분과를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회원 가입 이후에 소속분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국에 소정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조직)

- ①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에 소속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위원회 조직은 직무별로 구분하여 기획이사, 총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국제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및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5조(사업 및 활동)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에 의거 학회의 목적 및 사업에 부합하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를 운영 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워크샵,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학술행사 개최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된 교육, 연구 및 견학 등의 활동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 단체와의 학술적 교류 활동
 4. 해당 소속 연구회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단, 위 1항과 4항에 언급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6조 (분과위원 관리)

- ① 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의 명단을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사무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② 분과위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소집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소집 통보 시에는 회의명,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소속 위원들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 및 관리) 회장은 위원장의 서면요청에 따라 본 규정 제5조(사업)에서 언급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 학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연간 예산은 학회 지원금, 자체 수입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분하고, 학회 지원금은 연초(매년 1월1일)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학회 지원금과 전년도 이월금의 합이 위원회의 연간 최대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학회 지원금 연간 최대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 ② 회장은 위원회별로 동일하게 위원회의 연간 최대보유한도와 학회 지원금 연간

최대한도를 정한다. 또한, 회장은 위원장이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회장의 지시를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③ 위원회 예산은 사무국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연말 결산(매년 12월 31일 기준)을 통해 잔액 발생 시에는 차기 년으로 이월할 수 있다. 단, 차년도 이월금액은 분과위원회의 연간 최대보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금액은 학회 일반회계로 전입한다.

제9조(예산의 집행)

- ① 위원장은 모든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학회의 회계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회로부터 집행이 위임된 예산에 대해서는 학회의 회계 규정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 ① 위원장은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 학회 사업 및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칙)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13조 (통·폐합 및 해산)

- ① 회장은 학회 운영과 사업 활동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과위원회의 통·폐합 및 해산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분과위원회의 유지 필요성, 활동 및 사업현황 등을 평가하여 분과위원회를 통·폐합 및 해산할 수 있다.
- ② 통·폐합 및 해산된 분과위원회의 잔여예산은 학회 일반회계로 전입한다.
- ③ 통·폐합 및 해산된 분과위원회 소속의 연구회는 타 분과위원회의 연구회로 통·폐합 또는 해산한다. 단, 이 경우에도 잔여예산은 학회 일반회계로 전입한다.

제14조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또는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부칙 (2011.2.21.)

- 1. (경과조치) 본 규정을 제정하기 이전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본 규정은 2011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9.)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의 개정일은 2019년 8월 19일(이사회 승인) 이다.

제2조 (시행일) 위 개정일(2019.8.19.)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2019년 3월 18일자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의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9.9.6)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